

이달의 법령정보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시행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종전(개정 전)	현행(개정 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3.08.31	'23.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마감재료의 각각의 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설) 다만,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 5mm 이하)를 부착하여 제작한 경우 하나의 재료로 간음. - (신설) 0.1mm 이하로 도장한 경우 난연성능 시험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신설) 다만,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 5mm 이하)를 부착하여 제작한 경우 하나의 재료로 간음. - (신설) 0.1mm 이하로 도장한 경우 난연성능 시험 생략 가능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호)	'23.09.12	'23.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축조 심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규정 적용 제외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이하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높이 2분의 1 이상 : 높이 9미터 초과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 높이 10미터 이하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 : 높이 10미터 초과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신설) 하양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대피 공간 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m²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m² ▶ 동물병원 등의 소규모 건축물 용도 재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축조 심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 생략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이하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높이 2분의 1 이상 : 높이 9미터 초과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 높이 10미터 이하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 : 높이 10미터 초과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신설) 하양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대피 공간 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m²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m² ▶ 동물병원 등의 소규모 건축물 용도 재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 300m² 미만 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확정

아시아건축사협의회, 만장일치로 인천 개최지로 결정

대한건축사협회, 1988년·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가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유치했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단체 연합인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지난 9월 21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인천광역시를 2025년도 개최지로 결정했다.

이번 유치로 대한건축사협회는 1988년 제3차 대회(서울)와 2008년 제13차 대회(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개최지인 인천은 탁월한 접근성, 다양한 관광자원 등 국제행사 개최에 최적화된 도시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는 지자체와 민간협력의 우수한 성공사례로 남겨질 것”이라며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 상호 간의 우호증진과 기술교류 등을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인들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격년제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차기 대회 개최지로 인천이 확정됨에 따라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인천광역시와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대가 법제화’에 아시아 22개국 건축사 연대 강력 지지 건축사협회, 제도개선 박차

건축사협회,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국 회원국과

‘민간대가 법제화’ 긴밀히 공조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 중인 ‘민간대가 마련’ 법제화에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 건축사단체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힘을 합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우리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들은 한국의 ‘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대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에 공동 대응,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분야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일반 대중과 정부는 더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정당한 건축사 업무대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월간 건축사’를 기존 종이우편물 대신 ‘디지털우편물(이메일)’로 받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능한 지역사회와 도시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또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건축의 지속가능성, 추가 승인 프로세스 및 BIM 요구 사항을 포함해 낮은 대가와 늘어난 작업 범위 환경 하에서 공정·정당한 업무대가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해 건축사가 미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직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건축설계대가 수준이 지난 20년 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업무대가 상황은 ‘최저가 관행(생존)’이 만연해 있어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한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 보장과 커뮤니티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간대가 법제화 지지 관련 공동성명에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2개국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건축사단체 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장, 역대회장들이 함께했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창설된 이래 현재 아시아 2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건축사단체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추진하는 민간대가 법제화 관련해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 회원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 실현을 통한 건축사 업무대가 현실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행복나눔 일일카페’ 수익금 ‘푸른꿈청소년쉼터’에 기부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는 2023년 사회사업 일환으로 ‘2023년 경기도 건축사 체육대회’에서 진행한 행복나눔 일일카페의 판매수익금 전액을 ‘푸른꿈청소년쉼터’에 기부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용인지역건축사회 최종찬 회장, 이은주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장과 여성위원들은 9월 6일 ‘푸른꿈청소년쉼터’에 방문해 수익금을 전달하고 오수생 원장과 담소를 나눴다.

이은주 경기도건축사회 여성위원장은 “행복나눔 일일카페에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기금으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함께’라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이우편물 대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예전처럼 종이우편물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우편물수령’을 선택해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에 이어 올 6월부터 ‘디지털우편발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종이우편물 수령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물을 원치 않는 회원분께서는 협회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우편수령 여부를 아래와 같이 ‘미수신’으로 직접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종이 우편물을 원하실 경우 다시 ‘우편물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종이 사용 절감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우편물 제작·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감 비용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 우편 발송 여부 선택 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회지수신선택’에서 ●미수신으로 직접 변경
- 신문의 경우 ‘PDF 이메일 수신’ 선택 가능(건축사지는 저작권법상 PDF파일 공유가 불가합니다.)